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60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과정 운영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사지원과) 02-970-6033

제정 2012. 3. 1.

개정 2013. 5. 22.

개정 2020. 5. 20.

개정 2022. 9.1.

개정 2023. 8.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학과(부) 및 이수인원) 교직과정 설치 학과(부) 및 승인인원,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직과정 설치를 승인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2. 9. 1.)

제3조(이수신청과 선발) ①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부) 학생으로서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정해진 기간에 별지제1호서식의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② 교직과정 설치승인 학과(부)장은 교직과정 신청자 중 인성·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2학년 1학기 말에 교육부장관의 교직 승인정원 범위 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이하 "이수예정자"라 한다)를 선발한 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이수예정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 제4조(이수) ① 이수예정자는 교직과목 22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교직교육과정표'에 따른다.
- ② 이수예정자의 전공 이수 학점은 자격증 표시과목에 관련되는 전공과목 50학점(교직과정 설치학과 기본이수영역 과목 또는 분야 중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 ③ 이수예정자의 성적표에 명시된 성적을 기준으로 졸업평점 환산 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만 이수로 인정한다. (개정 2020. 5. 20.)
- 1.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 이상 취득
- 2.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전공과목은 평균성적 75/100 이상, 교직과목은 80/100이상 취득
- ④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인정하되, 타 이수영역으로 이중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⑤ 교직과정 설치 학과(부)는 전공과목 중에서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기본이수 영역별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 ⑥ 공업계열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이수영역 외에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⑦ 교직과정은 제1전공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 제5조(이수자격 상실과 이수포기) ① 이수예정자가 전과(부)할 경우에는 교직 과정 이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2. 9. 1.)
- ②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중도에 교직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직과정이수포기서를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중도포기자가 이미 취득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 제6조(교육실습) ①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실습신청서를 정해진 기간에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 ② 교육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대학이 지정하는 협력학교에서 4주간의 교육실습을 받아야 한다.
- ③ 교육실습내용, 시간배당 및 평가방법은 교육실습협력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7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 ① 이수예정자로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학위 취득 요건을 갖춘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 ② 학과(부)장은 자격검정 실시 결과를 학위수여일 3주 전까지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 ③ 교원자격증 발급대상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이 확정한다.
- 제8조(교원양성위원회) ① 우수한 교원양성을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직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 3.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위원은 교무처장, 교양대학장, 교직설치 학과(부)의 소속 대학장, 교양대학 인문사회교양학부장, 학사부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임명직 위원으로는 교원양성에 관한 전문가(외부인사 1인이상 포함)를 2인 이상 임명하며, 교원양성에 관한 전문가는 교양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5.22., 2020. 5. 20. 2022. 9. 1.)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명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외부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경비부담) 교직과정 이수에 필요한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부칙(2012.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60호, 2023. 8.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소	속	대학			학과(부)
신 청 인	성	명		학	번	
	주민등	록번호		·		
	연 ^리 (전화					

위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교사자격기준에 의하여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

- 1. 본 대학교 학칙에 정한 소정의 학위졸업을 위한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
- 2. 교직과정이수를 위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성적표에 명시된 성적을 기준으로 졸업평점 환산 점수가 다음을 충족해야 함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 이상 취득
- 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전공과목은 75/100 이상, 교직과목은 80/100 이상 취득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학과(부)장 (서명 또는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교직과정 이수 포기서

	소 속	학과(부)			
인 적	성 명	학 번			
사 항	주민등록번호	-			
71 8	연 락 처 (전화번호)				
교직과정 이수 내역		선발연도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			
# 7 7					
포 フ	기 사 유				

위와 같이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학과(부)장	학	장
경			
유			
협조	교육학책임교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성적증명서 1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성인	주소		전화번호		
검정 신청 자격					
	출신학교명	대학(교) 대학원		과(전공)	[] 졸업 [] 수료
자격요건	연수명				
	경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공통)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1. (공통)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없음			
	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	ы п			
담당자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확인 사항	가.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나.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호사면허증

- 영양사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간호사면허증・영양사면허증・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제3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2호· 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